

적립형공제급여사업 FAQ

(과학기술인공제회, 2021.10.1. update)

1. 가입 관련

Q1. 적립형공제급여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자격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

- ☞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4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^{주1)}에 해당하는 과학 기술 관련 사업장 재직 임직원 및 기술사회 정회원입니다. 소속 구성원의 가입을 위해 **각 사업장 및 기술사회와 공제회 간 사전 업무협약**이 필요합니다.
- ☞ 사업장이 회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회와 업무협약을 맺으시면 됩니다.
 - 협약절차 : 협약의뢰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→ 가입자격 확인 → 협약체결완료
 - 의뢰경로 : [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] > [공제] > [적립형공제] > [\[협약안내\]](#)

(주1) 회원의 자격(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4조)

- ◆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
 - ◆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
 - ◆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직원
 - ◆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
 - ◆ 기술사회 회원 및 임직원 기술사 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직원
 - ◆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
 - ◆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
 - ◆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
 - ◆ 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
 - ◆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임직원
 - ◆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임직원
 - ◆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임직원
 - ◆ 프론티어사업단, 융합사업단, 글로벌사업단 등의 임직원
- * 비영리법인과 행정기관은 회원자격 심의를 거친 공제회 협약기관에 한함

<p>Q2. 재직 중인 사업장이 공제회 협약기관입니다. 적립형공제급여사업 가입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?</p>
<p>☞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'가입신청'하시면 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온 라 인) 공제회 홈페이지 상단 > [회원가입] * 상품구분 - 적립형공제, 가입 회원 유형 - 협약기관 재직자 선택 - (오프라인) [공제] > [소식&정보] > [자료실]에서 '적립형공제급여 가입신청서' 작성하여 소속기관(회사) 공제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* 가입신청 후 승인은 첫 부담금 납부 시(급여일로부터 3~5영업일 이내) 완료됩니다.
<p>Q3. 적립형공제급여 가입금액 및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</p>
<p>☞ 가입금액 : 월 납입액 최소 5구좌 ~ 200구좌까지(1구좌당 1만원, 5구좌 단위로 가능)</p> <p>☞ 납부기간 : 가입시점부터 퇴직 시까지 *별도 만기 없음</p>
<p>Q4. 적립형공제급여 가입금액 증·감좌 가능하나요?</p>
<p>☞ 신규가입 후 또는 최종 증·감좌 후 3개월(3회 납입 후)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.</p> <p>☞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'부담금 증·감좌 신청'을 하시면 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온 라 인) [공제] > [MY공제] > [증좌/감좌 신청] - (오프라인) [공제] > [소식&정보] > [자료실]에서 '증·감좌 신청서' 작성하여 소속 기관(회사) 공제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
<p>Q5. (첫 납부 시)적립형공제급여 부담금이 공제되었는데 로그인 되지 않습니다.</p>
<p>☞ 적립형공제급여 부담금을 기관에서 급여공제 후 입금하면 공제회에서 마감을 하며 마감이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.</p> <p>☞ 마감완료 시점은 기관(일반)회원은 부담금 납부일(급여공제일)로부터 3~5영업일이 소요되며 기관 개별납부회원과 기술사 회원은 매월 부담금 납부일 익영업일에 마감이 완료됩니다.</p>
<p>Q6. 현재 가입 중인 회원입니다. 이번 달 급여에서 부담금이 공제되었는데 공제회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</p>
<p>☞ 적립형공제급여 부담금 반영의 경우에도 기관 마감에 완료되어야 반영됩니다.</p> <p>☞ 마감완료 시점은 기관(일반)회원은 부담금 납부일(급여공제일)로부터 3~5영업일이 소요되며 기관 개별납부회원과 기술사 회원은 매월 부담금 납부일 익영업일에 마감이 완료됩니다.</p>

Q7. 적립형공제급여 가입 후, 가입내역 및 증명서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?

☞ 가입 완료 후, 가입 내역은 [공제] > [MY공제] > [\[나의 가입현황\]](#)에서 확인 가능하며, 가입증명서는 [마이페이지] > [\[제증명서 발급\]](#)에서 출력 또는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Q8. 적립형공제급여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?

- ☞ 중도해지한 달부터 바로 재가입 가능합니다. 다만, 가입자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.(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4조)
- ☞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'가입신청'하시면 됩니다.
 - (온라인) [공제] > [MY공제] > [\[적립형공제 가입신청\]](#)
 - (오프라인) [공제] > [소식&정보] > [\[자료실\]](#)에서 '적립형공제급여 가입신청서' 작성하여 소속기관(회사) 공제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

Q9. 계약직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?

- ☞ 가입자격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5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임직원은 정규직, 계약직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☞ 다만, 사업장에 따라 운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근무 회사의 공제업무담당자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로 문의 바랍니다.

Q10. 기술사 회원과 다른 일반회원의 운영에 차이가 있나요?

- ☞ 과학기술관련 사업장 임직원 자격의 일반회원과 기술사회 회원자격의 기술사회원은 자격의 차이이며 회원지급률, 가입, 청구 등 제도 운영 전반에 차이가 없습니다.
- ☞ 가입, 부담금 증·감좌, 급여청구 등 운영 업무 관리에 대하여,
 - 기관(일반)회원은 소속기관의 공제 업무 담당자가 처리합니다.
 - 기술사 회원은 개별 납입자로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처리합니다.
- * 기술사 회원은 개별 납입을 위해 CMS 자동이체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.

2. 부담금 납부 관련

Q1. 적립형공제급여 납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
- ☞ 적립형공제급여는 **재직기간 동안 소속회사의 급여공제를 통해 납부**합니다.
- ☞ 따라서, 개별 납부는 불가하나, 급여공제가 불가피한 경우(무급휴직, 파견, 군입대 등)에만 개별납부(자동이체 출금)을 통해 납입이 가능합니다.

Q2.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립형공제급여 납부가 가능한가요?

- ☞ **퇴직하게 되면** 회원자격을 상실하므로 **계속 납입할 수 없습니다**. 다만,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제회 협약기관으로 취업하시거나 한국기술사회 정회원 자격인 경우 승계하여 계속 납부가 가능합니다.

Q3. 가입기간 중 중간에 잠시 납부 중지를 할 수 있나요?

- ☞ 부담금의 납부유예는 무급휴직, 군입대, 퇴직 후 승계대기 등 **부담금 납부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** 가능합니다(그 외 사유는 불가합니다). 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및 납부유예가 종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 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- ☞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'휴직/복직(납부유예)'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 - (온 라 인) [공제] > [MY공제] > [\[휴직/복직 신청\]](#)
 - * 신청정보 입력란에 '납부유예' 체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 - (오프라인) [공제] > [소식&정보] > [\[자료실\]](#)에서 '적립형공제급여 부담금납부 유예신청서' 작성하여 현재 소속기관(회사) 공제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

※ 현재 소속기관 퇴직 후 승계를 위해 납부유예를 하는 경우 하단 Q5. 참조

Q4. 무급 휴직기간에도 적립형공제급여 부담금 납부가 가능한가요?

- ☞ 무급휴직 또는 무급파견으로 기관에서 급여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**해당기간 동안 납입을 유예하거나 개별납부(자동이체 출금)가** 가능합니다.
- ☞ 개별납부(자동출금) 시 매월 지정된 정기출금일에 회원계좌에서 자동출금됩니다.
 - 정기출금일 1차 : 매월 10일, 2차 : 매월 15일
 - * 정기출금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처리 됩니다.
 - * 정기출금일에 미납 시 추가 불입은 불가합니다.
 - * 단, 정기출금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완료 건에 한하여 당월 출금이 진행됩니다.
- ☞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'휴직/복직(납부유예)'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
- (온 라 인) [공제] > [MY공제] > [\[휴직/복직 신청\]](#)
- * 신청정보 입력란에 '개별납부(자동출금)' 체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* 개별 납입을 위해 CMS 자동이체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.
- (오프라인) [공제] > [소식&정보] > [\[자료실\]](#)에서 '적립형공제급여 부담금납부 유예 신청서' 작성하여 현재 소속기관(회사) 공제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

Q5. 이직하게 되었는데 적립형공제급여를 이어서 납부하고 싶습니다.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?

- ☞ 이직하시는 회사가 공제회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승계하실 수 있습니다. 협약이 안 된 경우에도 공제회법에서 정한 가입대상이라면 신규협약을 거쳐 승계가 가능합니다.
- ☞ 다만, **승계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.** 6개월 초과 시 승계는 불가하며 현재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.**(일시금 수령 시 퇴직일 이후 이자는 14일까지만 계상)**

☞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적립형공제급여 승계 신청하시면 됩니다.

<퇴직 후 승계대기>

- (온 라 인) [공제] > [MY공제] > [\[퇴직 후 승계신청\]](#)
- (오프라인) [공제] > [소식&정보] > [\[자료실\]](#)에서 '적립형공제급여 회원자격상실 유예신청서' 작성하여 현재 소속기관(회사) 공제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

<승계신청>

- (온 라 인) [공제] > [MY공제] > [\[승계신청\]](#)
- (오프라인) [공제] > [소식&정보] > [\[자료실\]](#)에서 '적립형공제급여 회원승계 신청서' 작성하여 현재 소속기관(회사) 공제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

※ 전 소속기관에서 퇴직 후 승계 승인된 이후 승계 신청 가능

3. 급여청구 관련

Q1. 퇴직 후에는 꼭 적립형공제급여 지급신청이 필요한가요?
<p>☞ 적립형공제급여의 지급은 가입한 회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퇴직 이후 급여지급신청을 해주셔야 지급이 됩니다. 5년 이상 청구하지 않을 시 회원의 급여금 반환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.</p>
Q2. 적립형공제급여 납부금액 중 중도인출(부분해지)가 가능하나요?
<p>☞ 중도인출(부분해지)은 불가능합니다.</p> <p>☞ 필요시 적립형공제급여 전액을 중도해지 하시거나, 적립형공제급여를 담보로 적립금의 90%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.</p>
Q3. 퇴직 또는 해지사유로 급여지급신청 시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
<p>☞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'급여지급신청'을 하시면 됩니다.</p> <p><퇴직 시 급여지급신청 방법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온라인) [공제] > [MY공제] > [탈퇴/퇴직(급여청구)신청] * 청구내역 입력란에 청구사유를 '퇴직'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 * 부담금 수령은 일시금, 연금 또는 일시금 + 연금 형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(단, 연금은 납부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) - (오프라인) [공제] > [소식&정보] > [자료실]에서 '적립형공제급여 지급청구서' 작성하여 현재 소속기관(회사) 공제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<p><중도해지 시 급여지급신청 방법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온라인) [공제] > [MY공제] > [탈퇴/퇴직(급여청구)신청] * 청구내역 입력란에 청구사유를 '중도해지'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 * 부담금 수령은 일시금으로만 가능합니다. - (오프라인) [공제] > [소식&정보] > [자료실]에서 '적립형공제급여 지급청구서' 작성하여 현재 소속기관(회사) 공제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
Q4 적립형공제급여 지급청구 시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떤 것이 좋나요?
<p>☞ 일시금과 연금은 동일한 수익률(회원지급률)과 세제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어떤 것이 유리한지 보다는 회원 개인별 자금의 필요시기와 규모, 수령기간에 따라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, 퇴직 후 바로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일시금을 선택하시고, 퇴직 이후에도 시중은행 대비 높은 수익률로 운용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연금 수령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</p>

Q5. 급여지급신청 후 언제 입금되나요?

- ☞ 지급신청건을 소속기관 **공제 업무 담당자 승인 후 1~2영업일 이내로 지급**됩니다.
- ☞ 통상 해당 월에 급여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 기관승인 후 공제회에 접수된 날의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. 단, 해당 월에 급여공제가 된 경우 소속기관의 부담금 마감일이 끝난 이후에 지급처리 절차가 진행되어 신청일이 소속기관 급여일에 맞물린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※ 퇴직 사유로 급여지급신청을 한 경우 퇴직서류 확인이 완료된 후 1~2영업일 이내로 지급됩니다.

Q6. 퇴직했을 경우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?

- ☞ 퇴직 해지 시, **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납입원금 및 적립된 이자 전액을 지급**합니다.
- ☞ 퇴직일 이후 이자는 **일시금 수령 시, 14일까지만 계상**하여 지급됩니다.(일시금 퇴직일 이후 이자(퇴직일~지급일)는 일반과세(15.4%)). **연금으로 수령 시, 퇴직일부터 연금개시 전까지 이자가 계산**됩니다.(연금 퇴직일 이후 이자는 저율과세(0~4%))

※ 연금 거치기간 중 이자 역시 적립형공제급여 회원지급률로 적용됩니다.

Q7. 적립형공제급여 중도해지 시 이자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?

- ☞ 중도해지 시에는 원금은 100% 지급되나, 이자는 가입기간별 중도해지지급률이 적용되어 일부만 지급됩니다. 다만,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도해지인 경우라도 100% 이자가 지급됩니다.

- 중도해지수령액 = 원금 100% + (누적된 이자금액 × 중도해지지급률)

가입기간	1년 미만	1년 이상 3년 미만	3년 이상 5년 미만	5년 이상 7년 미만	7년 이상 10년 미만	10년 이상
중도해지 지급률	20%	30%	40%	60%	80%	100%

Q8. 연금 수급 중 사망 시 어떻게 지급되나요?

- ☞ 연금수급자가 수급기간 종료 전 사망한 경우, 잔여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 유족의 수급 순위는 민법 상 재산상속 순위에 의합니다.
 - ☞ 오프라인을 통해 '유족일시금 지급 청구'를 하시면 됩니다.
 - (오프라인) [공제] > [소식&정보] > [\[자료실\]](#)에서 '유족일시금 지급 청구서' 작성하여 공제회로 제출
- * 제출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30 15층 과학기술인공제회 "적립형공제급여 담당자 앞"

Q9. 적립형공제연금 수급조건 변경이 가능할까요?

- ☞ 개시여부와 상관없이 연금 수급주기 및 기간, 수령계좌, 수급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. (단, 연금 개시시점은 연금 개시 전에만 변경 가능)

구분	연금 개시 전	연금 개시 후
변경신청 가능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금 수급주기 및 기간 • 연금 수령계좌 • 연금 수급방식 • 연금 개시시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금 수급주기 및 기간 • 연금 수령계좌 • 연금 수급방식
신청가능 기간	• 연금 개시 전 월까지	• 연금 개시 전 월까지

- ☞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'적립형공제연금 지급취소·변경·일시정지 신청서'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 - (온 라 인) [마이페이지] > [MY공제] > [적립형공제연금] > [\[연금 변경신청\]](#)
 - (오프라인) [공제] > [소식&정보] > [\[자료실\]](#)에서 '지급취소·변경·일시정지 신청서' 작성하여 공제회 공제업무 담당자에 제출
- * 제출처 : (E-mail) info@sema.or.kr, (Fax) 02-3469-7799

Q10. 적립형공제연금 수급취소가 가능할까요?

- ☞ 연금 개시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. 다만 연금 개시 전 사망 이외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퇴직일 이후 이월은 일시금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연금급여사업의 현금성 자산 지급률을 적용합니다.(‘21.10.1 기준 1.0%)
 - ☞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'적립형공제연금 지급취소 신청서'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 - (온 라 인) [마이페이지] > [MY공제] > [적립형공제연금] > [연금 취소신청]
 - (오프라인) [공제] > [소식&정보] > [\[자료실\]](#)에서 '적립형공제연금 지급취소 신청서' 작성하여 공제회로 제출
- * 제출처 : (E-mail) info@sema.or.kr, (Fax) 02-3469-7799

4. 상품 공통사항

Q1. 적립형공제급여는 변동금리인가요? 확정(고정)금리인가요?

☞ 적립형공제급여는 변동금리입니다.

Q2. 적립형공제급여 회원지급률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?

☞ 적립형공제 회원지급률은 **규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** 회원지급률조정위원회*에서 조정(안)을 제출하고, **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·시행**됩니다.

☞ 회원지급률조정위원회는 **매년 기준금리***를 고려하여 **기준금리보다 1.5p~2.0%p 높게 회원지급률을** 조정합니다.

* 기준금리 :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3개월 평균

☞ 만약, 조정 전후 회원지급률의 변동폭이 2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원지급률조정위원회에서 회원지급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, 기준금리가 최종 지급률 조정 당시 보다 10%이상 변동될 경우 추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Q3 가입 중 회원지급률이 변경되었는데 이자 계산이 달라지나요?

☞ 회원지급률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일까지는 변경 전 회원지급률로 적립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여 적립되고, 변경일 부터는 변경된 회원지급률로 이자가 발생하여 적립됩니다.

※ <참고> 연복리 변동금리 이자계산식

$$\sum_{h=1}^n \text{회차 납입원금} \times [(1+r_1)^{d_1/365} \times (1+r_2)^{d_2/365} \times \dots \times (1+r_i)^{d_i/365}]$$

(n: 총납입회차, r : 회원지급률, d :경과일수, i :회원지급률 변경회차)

Q4. 회원지급률 변경 시 적립형공제연금에도 영향이 있나요?

☞ 적립형공제연금도 연금 수급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역시 회원지급률 변경에 따라 회원지급률이 적용되어 연금 스케줄이 변경된 회원지급률에 맞춰 새로 생성됩니다.

☞ 스케줄은 연차별로 설계되므로 회원지급률이 변경된 시점에 바로 적용되지 않으며 새 연차가 시작되는 때부터 적용됩니다.

Q5 적립형공제 일시금 수령 시, 이자소득세는 몇 % 인가요?

- ☞ 소득세법 제63조 「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」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세율(15.4%)을 적용하지 않고, **가입기간과 발생이자에 따라 낮은 세율(0~4% 내외)을 적용**합니다.
- ☞ 또한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.
- ☞ 적립형공제급여를 일시금 수령하시는 경우 퇴직일 이후 14일까지만 이자를 드리는데 이때 발생한 이자는 일반과세(15.4%)되며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.

Q6. 적립형공제급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가능하나요?

- ☞ 적립형공제급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Q7. 적립형공제연금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?

- ☞ 적립형공제연금은 **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**
- ☞ 적립형공제연금은 적립형공제급여를 퇴직 시 연금으로 전환한 연금전환금과 연금수령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연금형식으로 나눠 받는 상품입니다. 연금전환금은 퇴직 당시에 원천징수가 완료된 자금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며, 연금수급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합니다.
- ☞ 적립형공제급여 일시금과 마찬가지로 **적립형공제연금도 소득세법 제63조 「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」규정에 따른 세제혜택의 대상**입니다.
- ☞ 따라서, 연금수령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는 일반과세세율(15.4%)을 적용하지 않고, 연금전환 때 원천징수할 당시 저율과세로 확정된 세율을 연금수령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합니다.(0~4%)
- ☞ 또한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.

Q8. 적립형공제급여는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?

- ☞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5천만원 한도의 예금보험제도는 은행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, 과학기술인공제회법(법률 15237호)에 의해 설립·운영되는 특별법인인 **공제회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.**
- ☞ 다만, 공제회는 회원자산을 안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**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정관에 사업결손금의 보전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.** 만약 사업수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과 정관에 따라 사업결손금은 자본금(회원의 부담금,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출연금 등)으로 보전되며, 공제회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필요할 경우 보조금 출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(공제회법 제17조)
- ☞ 이러한 회원자산의 보호방식은 과학기술인공제회 뿐만 아니라 먼저 설립되어 운영 중인 군인공제회, 교직원공제회, 행정공제회, 경찰공제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들의 공통 적용 사항입니다.
- ☞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국회 국정감사, 감사원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대상기관으로 국회 및 정부로부터 운영에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. 또한, 예산과 결산 등 주요사항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승인을 받는 등 회원의 자산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, 주요 경영정보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.(공제회법 제19조, 제21조의2)
- ☞ 경영정보공시 : 공제회 홈페이지(<http://www.sema.or.kr>)'about SEMA > 경영정보 > 주요사업현황 / 재무현황 / 자산운용 / 기타공시' [\[바로가기\]](#)